별첨1 결격사유의 적용

□ 적용 사유 및 조치사항

O 채용 결격사유자에 대한 조치

- 결격사유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5.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원규「인사 규정」제6조 의거

O 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 채용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부정청탁, 비리 등으로 부정하게 합격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에게 제14조 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관련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함

※ 원규「직원채용 시행규칙」제14조 의거

O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 결격사유조회 결과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시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원규「직원채용 시행규칙」제19조 의거

O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개인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등)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소정 양식 미준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